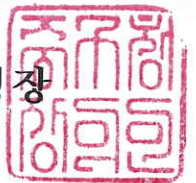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자치구간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고충민원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 수정(제6조)
- 고충민원 인용조항 수정 및 제외 대상 수정(제7조)
-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절차 수정(제12조)
- 제22조(시행규칙)를 제26조로 조문번호 변경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결정,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규정 신설
  - 제2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제23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제2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제25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8021, 팩스 : 02-3396-9017~8, email : nirval@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법 제88조제4항제3호”를 “법 제88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8조에 따른 ”을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회”를 “3회”로 한다.

제22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5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4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생략)</p> <p>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u>법 제88조제4항제3호</u>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p> <p>3. <u>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u>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p>	<p>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법 제88조제5항제3호</u></p> <p>-----</p> <p>3.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p> <p>-----</p>
<p>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u>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u></p>	<p>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p> <p>-----</p> <p>----- <u>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p>	<p>② ----- 3회 ----- ----- ----- ----- ----- ----- ----- ----- -----.</p>
<p>&lt;신설&gt;</p>	<p><u>제2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u>  ① <u>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u>  ② <u>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u></p>



현행	개정안
<신설>	<p>제23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li> <li>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li> </ol>
<신설>	<p>제2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p>
<신설>	<p>제25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4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li> <li>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li> </ol> </li> <li>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li> </ol>
제22조 (생략)	제26조 (현행 제22조와 같음)